외국어 및 종합시험 자격시험에 관한 내규

제 정: 1991.03.02.

최근개정: 2021.05.18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 제7장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자격시험의 종류)

- ①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석·박사학위과정 공히 학위청구논문심사의 제출에 앞서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②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2종으로 한다.
- ③ 예능계열의 경우 연주 또는 발표회를 갖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시험시기)

- ①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.(2020.06.26.개정)
- ② 종합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. (2020.06.26.개정)

제 4 조 (자격시험의 출제위원)

- ① 영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.
- ② 제2외국어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이 해당 외국어학과의 교수 또는 적격한 인물(교내 전임으로 해당 외국어 교수가 없는 경우)에 위촉하여 관리한다.
- ③ 종합시험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책임하에 출제하고 그 시험은 교학과에서 관리한다.

제 5 조 (외국어 자격시험의 응시 시기)

외국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각 학위과정 공히 1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.

제 6 조 (응시절차와 수험료)

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각각의 소정의 응시원서(별지1, 별지2) 와 수험료를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외국어시험의 면제)

- ① 입학시험에서 영어 8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- ②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영어교육을 또는 18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(외국인원생)을 필하고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시험(70점 이상)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[2019.01.05.개정]
- ③ 외국어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가 공인 영어시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(TOPIK)에 응시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을 얻은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
 - 1. 내국인원생 : 토익 800점 이상, 토플 530점(CBT 197점, IBT 71점), IELTS 5.5, TEPS(NEW TEPS) 400점, CEFR B2.[2021.05.18.개정]
 - 2. 외국인 또는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 :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

[2019.01.05.개정]

- 제 7조의 2(종합시험의 면제) 종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[2019.10.18.개정]
 - 1.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.0(4.5만점 기준) 이상인 석 · 박사 과정생
 - 2.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(등재후보지 포함) 또는 SCI(SSCI)급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·박사 과정생[2019.01.05.개정]

제 8 조 (재응시)

삭제 [2019.10.18.개정]

제 2 장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

제 9 조 (시험 과목)

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단, 외국인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국 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 한다.[2019.01.05.개정]

제 10 조 (합격 인정)

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외국인원생과 본래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 한다.[2019.01.05.개정]

제 3 장 석사과정 종합시험

제 11 조 (응시 자격)

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.

- ①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
- ②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이거나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자

제 12 조 (시험 과목)

종합시험 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.

제 13 조 (합격 기준)

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 4 장 박사과정 외국어시험

제 14 조 (시험 과목)

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. 단, 외국인 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모 국어를 제외한 영어 또는 한국어 과목 중 택일한다.[2019.01.05.개정]

제 15 조 (합격 인정)

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단, 외국인 원생과 본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원생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.[2019.01.05.개정]

제 5 장 박사과정 종합시험

제 16 조 (응시 자격)

박사과정 종합시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54학점이상(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 포함)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.

제 17 조 (시험 과목)

종합시험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.

제 18 조 (합격 기준)

종합시험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

제 6 장 예능계열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의 심사

제 19 조 (신청 자격)

예능계열 석사과정의 연주 또는 작품발표 신청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과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되,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다.

제 20 조 (심사 절차)

연주 또는 작품발표 2주 전까지 발표신청서(별지 3)를 제출하고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21 조 (심사 기준)

심사의 합격 기준은 '가' 또는 '부'로 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'가'를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(별지 4).

- 부 칙 -

- 1. 본 개정 내규는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개정 내규는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개정 내규는 1995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4. 본 개정 내규는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5. 본 개정 내규는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6.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7. 본 개정 내규는 200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- 8. 본 개정 내규는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9.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11. 본 개정 내규는 201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- 12. 본 개정 내규는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13.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14.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15.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16. 본 개정 내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17. 본 개정 내규는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